

理事會 構成과 機能의 實상과 問제점

朴 荣 根
(中央大 佛語佛文學科)

1. 彈壓과 墮落의 現住所

우리 교육에 또다시 탄압과 타락의 회오리가 드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6 공화국은 民族·民主·人間化 교육을 의친 1,527 명의 교사를 해직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부정비리를 규탄하고 학원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한 100 여 명의 교사와 54 명의 교수를 재단과 함께 짜고 강단에서 내몰았다. 5 共시절에는 해직된 교수가 9 명이었는데, 6 共에서는 '91년 7 월 31 일 현재 56 명이나 된다. 특히 지난 8 월 31 일 稅務大學은 이원희 교수(민법)를 학교 안팎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제도를 악용해서 탈락시켰다. 한편, 全州大는 지난 3 월 대학원 입시 부정 사건에 관련된 차용준 교수를 파면했다. 그런데 이 교수의 구명운동을 벌인 같은 학과 오세홍 교수와 원한석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최규홍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학내 분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수원의 매탄국민학교와 충남 태안의 서남중학교에서 時局宣誓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방임 아래 여선생을 포함한 교사들을 폭행한 난동 사태가 일어난 것이 최근에 자행된 교육탄압의 첫 신호였다. 이 신호에 맞추어 지난 22 일 현법재

판소는 논리적 설득력과 진실을 지닌 소수 의견을 무시한 채 노조설립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해 학연결정을 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자신의 위상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압 분위기를 한번에 이용하려는 듯 전국 15 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25 일 학무국장 회의에서 명지대 생 강경태씨의 탈사건으로 생긴 지난 5~6 월의 사태에 대해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 중 93 명을 무작스레 정계키로 하였다. 게다가 8 월 1 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대학교수의 목을 옥죄고 있다. 교수의 教權이 종전에는 법률로 보호되었으나, 앞으로는 行政命令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정년교원정원제와 교수재임용제라는 이중의 장치로 정부와 재단의 눈에 거슬리는 교수들을 교단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 '87년 대학 자율화 과정중 학칙에서 사라졌던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제를 되살리기 위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는 대학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속셈이 깔린 이런 움직임은 지난 6 월 정원식 총리서리 폭행사건 이후 교육부가 학원안정 대책의 하나로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강력히 권고해 온 테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학의 권위를 뿌리부터 끊는 構造的인 부정·비리 痘候群이 계속 대학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능계의 이른바 예술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른 파렴치한 부정입시 및 교수와 악기 상이 짜고 한 가짜 악기 판매사건, 그리고 교육 재정의 열악성을 내세워 교수·직원 심지어 총장과 이사장이 합세하여 저지른 엄청난 입시부정이 대학을 타락·오염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84년 이후 현 교육부가 전국 20여 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감사한 결과, 1천 5백 여 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그중에서도 상지대 134 명, 경기대 200 여 명, 전주우석대 223 명, 경산대 61 명, 동국대 45 명, 인하대 43 명, 고려대 21 명, 한성대 56 명의 부정입학 숫자와 엄청난 금액 그리고 방법의 교활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다. 특히 교수 수가 200 명 미만이고 교육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재단의 장악이 손쉬운 群小大學에서 입시부정은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대학의 가장 신성한 학사행정 중의 하나인 入試에서 이처럼 부정이 심한 것을 미루어 보면, 대학사회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밀 뿌리부터 썩어 문드려져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痘的일 정도로 뜨거운 교육열 그리고 입시경쟁이 아니라 '입시전쟁'이라는 한국적 특수 상황을 생각한다면 입시부정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犯法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최근 전국대사건은 그 규모와 지능적인 방법에 있어서 충격적이다. '89년부터 4년에 걸쳐 1백 여 명의 학생들로부터 35 억을 받고 부정입학시켰다는 수사 결과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입시부정이 폭로된 적접적인 계기는 재단과 총장 그리고 이를 주위의 일부 몰지각한 교수와 직원의 利權을 둘러싼 교내 파벌싸움에서였다. 심지어 이 학교의 젊은 이사장인 유승윤씨는 동래실업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부동산을 사들여 골프장 사업에 눈독을 들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빙축을 사기까지 했다. 도서관 건립을 명분으로 거두어 들인 '검은 돈'의 일부는 기밀비·판공비로 탈바꿈해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도처에 흘러갔으리라 쉽게 짐작된다. 물론 교육재정의 열악성이 입시부정의 주요한 원

인이지만, 이른바 '생자옥'이라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재단의 도덕성 회복, 교육의 公概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부정입학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철저한 감독과 감사, 사학 재정난에 대한 국고의 과감한 지원, 입시부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특히 부정입학 학생과 학부모 명단의 공개 및 처벌이 일벌백계식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 행위의 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공정한 경쟁 대열에 선 菩慧의 학생과 돈 없는 학부모 당사자가 될 것이다.

2. 私立學校法의 反民主性

특히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점은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이후 학내에서는 재단의 痘疾의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세력이 발불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76%의 대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私學에 대해 財政支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해 3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수재임용제를 해마다 적용할 수 있고, 둘째로 교수와 직원의 임면권을 재단으로 넘기며, 셋째로 이사장 가족의 총·학장 취임을 가능하게 하고, 넷째로 친척의 이사 취임 비율을 40%로 늘리며, 다섯째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타교 겸직을 허용하고, 여섯째로 재산 임대의 문교부 협조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 여러 교육단체들은 이미 教育關係法을 민주적으로 고치도록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88년 하반기부터 전국교사협의회, 전국 국립대학 교수협의회 의장단,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민주 교육단체들은 교육관계법을 고치기 위해 대중집회,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85개 대학 4,478 명의 교수들은 '89년 5월 17일 "교육악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 노도와 같은 항의와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법인의 출기찬 물밀 대화와 거래에 의해 與·野 문공위원들은(야당 의원이 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교육법은 심의조차 않고 하위법인 사립

학교법 개정안을 ‘찬·반 토론 없이’ ‘비공개리에’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타협에 의해 짚싸게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미 ’88년 7월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이 법의 시안을 만들어 막후로 비를 끈질기게 벌여 왔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大學과 社會民主化를 위해 애쓰는 교수들을 탄압하려는 정권과 재단의 慎意가 보이는 사립학교법의 칼바람이 이처럼 교육계를 향하고 있다. 많은 재단은 대학을 私企業으로 여기고 족벌체제를 만들어 부정을 저지르고, 낙하산식 교직원 인사로 감시망을 만들어 대학 구성원 간의 불신을 증폭시켜 왔던 교육계의 ‘검은 손’이다.

지난 해 11월 3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빼 여명의 대학법인 이사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법인 협의회(회장 유상근 명지대 이사장) 정기총회에서 유상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의대 이사장은 부산·경남 출신 의원들을 꽂 잡고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덕성여대 이사장은 서울출신 의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녔습니다……총신대학 이사장은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한양대 이사는 평민당의 지역인 광주·호남 지역의 국회의원을 설득시킨 공이 있습니다……광주대 이사장은 국회 내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계의 대부이자 큰 손인 유희장은 자신들의 ‘영역주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私立學校法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은 각 대학 이사장의 혁혁한 전파(?)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주었다. 이어서 유희장은 이사장들의 저인망 로비 활동 덕택으로 299명의 이른바 선량 중에서 반대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검은 낙지꿰듯’ 뉘았다는 어화고(?)를 자랑했다. 21%의 세비인상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마다 516만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쟁기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대학법인의 엄청난 ‘당근 공세’에 무릎을 끊었다. 왜 정부는 이와 같은 ‘검은 거래’를 조사하지 않는가? 집단이기적이고 부도덕하게 야합한 두 집단은 대학 구성원의 教授權·學生權·行政權을

목주머니로 만들었다. 대학 구성원의 권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학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으로써 재단의 권한과 이익만을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관철시킨 이 단체의 우두머리는 “우리 사학재단들이 합심하여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면 사립대의 재정과 관련된 조세제도 개정법안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청을 불인 후, 재단재산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면세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합심하자고 나팔을 불었다. 게다가 이 단체는 사립학교법을 다시 고쳐서 현법이 보장한 직원의 노동 3권을 몰수하려는 음모를 꾀했다. 이 협의회는 해방 이후 많은 保守利益團體가 늘 해온 것처럼 합리적 비판세력을 용공·좌경으로 몰아부쳐 자신들의 既得權을 관철시키는데 항상 이용해 왔던, 약효가 확실한 무기인 ‘해드 콤플렉스’를 이 청원서에서도 잊지 않고 치방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 직원노동조합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시행하는, 능력과 직급을 무시한 단일호봉 보수제 실시를 폭력시위로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좌경학생과 비밀연계하여 상호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교육행정 관리와 학교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억지와 양탈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못생긴 색시 달밤에 샷갓 쓰고 나선다”는 속담처럼 違憲 요소마저 있음에도 무엇때문에 사립학교법을 고쳐서 대학법인에게 교수와 직원의 임면권 및 제청권을 부여하고, 교육전문가도 아닌 이사장과 그의 친·인척에게 총·학장 취임을 용인하는가? 교육부는 왜 재단의 이와 같은 전횡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감싸고 밀어주는가? 더군다나 최근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대학 운영의 반민주성·비도덕성 때문에 물러났던 학교 설립자들이 자율화와 민주화의 물결을 빙자해서 다시 총장의 권좌에 올라앉아 교주 노릇을 하면서 ‘영역주권’의 나팔을 불어 학원분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3. 大學法人의 超法的 行態

심지어 사학재단은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결론을 던질 수밖에 없는 희한한 사건마저 발생했다. 전남 나주 세지중학교 재단

(이사장 신광남)은 지난 '87년 족벌체제와 재단비리의 시정을 요구한 이기남·류기홍 교사를 해임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지난 6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86년 12월 31일 재단비리와 학교운영 개선을 요구한 22명의 교사 가운데 17명을 의원면직, 강제사직, 해임, 파면 등의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교단에서 쫓아낸 신이사장과 그녀의 남편인 설립자 나용목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법은 법도 아니고 판사들도 다 썩었다”고 강변했다. 복직조치를 3개월이나 미루어 오던 재단측은 지난 9월 12일 교사들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재단측은 복직된 지 3일만인 지난 15일 개정 사립학교법 제66조 2항을 ‘최초로’ 적용해서 이들을 직위에 제시시키고 정직을 요구하는 징계의결서를 본인에게 보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2항에 따르면, 징계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표정의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났을 때에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별건 대낮에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 질서를 농락하는 이 재단이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이용해서 교사들의 교권을 마구 짓밟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동의대 이사장이 ‘학원안정법’의 제정을 반대한 장희창 교수를 제임용에서 탈락시키고 이 학교의 입시부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임시킨 김창호, 박동혁 교수가 해임무효 확인소송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에 신청해서 '90년 10월 모두 승소했음에도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깔아뭉개고 이 두 교수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 동의대 사태를 취급한 MBC의 ‘PD수첩’에서 김임식 이사장은 이 땅의 교육을 송두리째 짓밟으면서 아래와 같이 본바탕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학교는 내가 만들었다.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그것은 사법부의 의견이고 나는 나대로 이 학교를 운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두 교수를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내가 이 학교의

‘主人’인 이상 결코 두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동의재단은 두 교수의 복직은커녕 지난 8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두 교수를 제임용에서 탈락시켜 두번씩이나 즉이는 만행을 자행했다. 교육부는 이런 악랄한 일에 왜 침묵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난 '86년 2월 재단쪽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측에 의해 면직됐던 김선형 교수 가 학교재단 선인학원을 상대로 낸 죄권면직 무효확인소송 1,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서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최근 안기부 간부출신을 교수로 임용해 말썽을 빚은 선인학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대학에서 면직된 교수를 임용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4. 大學法人的 暴力使嗾

또한 재단의 부추김에 따른 폭력이 학원에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10일 새벽 1시 10분쯤 비판적 교수들에게 교권탄압이라는 ‘용단폭격’을 펴붓고 이사장이 학장을 골프채로 때려서 유명해진 광주 호남대 본관 앞 잔디밭에서 이 곳에 세워둔 이 학교 출신인 표정두씨('87년 학생시위 때 사망) 추모비 제단을 칠거하려던 이 학교 학생과장 등 교직원과 체육특기학생 50여 명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 학교 학생 70여 명과 충돌했다. 또 이날 오전 9시 40분쯤에는 이 학교 체육과 학생 7명이 이 사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총학생회 사무실에 마구 들어가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 안에 있던 학생을 집단폭행해서 고막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혔다. 한편, 이 학교 총학생회는 당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는 재단쪽이 교직원과 권투부 학생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학생회를 억누르려는 움직임이라며, 재단쪽의 이와 같은 탄압에 맞서 추모비 건립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단쪽이 권투부 사범과 트레이너를 학생과의 직원으로 뽑고,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한 권투부 학생 10여 명을 教校隊로 활용해서 총학생회실 난입과 폭행을 자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광주지검 공안부는 11일 광주 호남대

교내 추모비 건립을 둘러싼 교직원과 학생 집단 충돌사건에 관련해서 학교쪽과 총학생회쪽을 불문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관련자 모두를 검거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학생들의 추모비 건립 강행은 학교쪽의 재산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속초 동우전문대학에서도 일어났다. 자유총연맹 이사장인 정일권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학교 안에서 제단의 부추김을 받은 학생과 직원들과 학생들의 폭력이 횡행하고 있었다. 거기에 항의해서 지난 3월 20일 이 학교 동아리 연합회장인 정연석군이 “학원자유화 쟁취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분신을 했다. 이밖에도 일부 문제 사립대학에서는 교수와 직원에 의한 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전주우석대에서는 학생처장의 묵인 아래 학생과 직원들이 도피 중인 학생회 간부들의 소재를 데라며 두 학생을 무차별 구타해서 말썽을 빚고 있다. 과거 ’60~’70년대에 사학제단들이 학내 비판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상투적으로 이용했던 방법, 즉 제단의 사주를 받은 일부 교수·직원·학생들의 폭력이 아직도 학원에서 공공연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5. 大學法人的 族閥體制

특히 대학법인은 전근대적인 족벌체제를 만들어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 사립대학의 경우,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 기구로서 이사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으로 채워져야 할 이사회는 비전문적이고 족벌체제적인 형태를 뼈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 오랫동안 학내 분규로 말썽이 되어 왔던 조선대, 수원대, 세종대, 인천대 등 많은 사립대학은 족벌제단과 제단의 횡포가 큰 불씨로 작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교수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침묵의 우물’에 안주했다. 특히, 제단의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학사행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

구한 김경식 교수를 채임용에서 탈락시킨 사단법인 동아제단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동아학원은 산하에 대전중경공업전문대학, 대전상업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대전동중학교, 동아유치원, 대전실업전문대학을 소유한 거대한 사학체별이다. 동아제단의 족벌체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김노원(동아제단 설립자, 김정우의 부친)

김정우(동아제단 이사장)

박종순(대전실전 학장, 동아제단 이사, 이사장 조카
사위)

김성경(대전실전 부학장, 행정과 부교수, 동아제단
사무국장, 이사장 아들)

김충경(동아연필 사장, 동아제단 이사, 유령 교수,
이사장 아들)

김광경(삼광택시 대표이사, 의상과 조교수, 이사장
딸)

김요경(행정과 부교수, 채단기획실장, 이사장 조카)

김성규(서부과 직원, 이사장 조카)

박경희(동아유치원장, 이사장 며느리)

한영자(유령 직원, 이사장집 가정부)

한편, 세종대의 경우를 보면 과연 이 땅의 대학법인에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이 남아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 某교수는 이사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某학장은 학생들이 이사장님을 비난하는 시위를 하는데도 적극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총학생회는 ’88년 세종대 학생들이 족벌제단의 부정비리를 규탄하는 농성과정에서 발견했다. 이사장의 친척인 아무개 여교수가 이사장의 아들인 기획실장에게 보낸 편지내용은 사학제단의 족벌체제가 지난 치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학의 공공성·자주성·특수성을 유린하고 교육을 상품화시켜 온 대양제단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그대로 온존되어 있는 사학제단의 전형일 뿐이다. 더군다나 주영하 세종대 이사장의 아내이자 실세인 최옥자 전 명예총장이 ’80년 8월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두환위원장님의 애국애족의 놀라운 슬기와 용기, 영단이 오늘의

평화와 경제회복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극찬하고, 당시 5·18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위원장님의 신속하신 영단으로 전장군 사퇴 요구 등 엄청난 탈선·소란행위와 폭동을 저지했다”고 외친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저질 코메디는 학내민주화 세력과 관련된 언급에서 결정에 이른다. “문교부의 감사로 이들은 개가와 환호를 올리며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며 “전위원장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세종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주영하씨와 최옥자씨의 장남인 주명근씨가 교육관계법의 소정 절차를 무시하고 정교수로 부임(1978년 당시 31세)하면서 인사, 학사, 재무 등 갖가지 분야에서 비민주적 인사행정과 비합리적 학사행정을 통해 학원을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에 기인한다. 그는 1980년 세종대에 잠시 존재했던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반제단 교수들로 몰아부쳐 75명 중 50명을 강단에서 쫓아낸 장본인이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학재단은 족벌체제만이 아니라 반교육적이고 고루한 인사들과 친·인척 그리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철옹성을 쌓아왔다. 지난 해 성낙돈 교수를 일방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교육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덕성여대 이사진의 명단을 살펴 보면 사학재단의 위상과 문제점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박원영(박원국 이사장의 동생), 서명원(전 문교부장관, 현 세종대 이사), 조영식(경희대 총장), 김희집(고려대 총장), 박동서(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자(덕성여대 동문회장, 청량리 정신병원장부인), 이태영씨 등 이른바 교육계의 대부들과 교육철학이 없는 자들이다.

6. 私學財政難과 國庫支援의 不在

이제 사립대가 직면해 있는 재정난과 국고의 재정지원을 살펴 보면, 우리 교육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다 원천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와국과 한국의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 또는 정부운영 대학이다. 미국에서는 주립에

는 78%, 사립에는 22%를 정부가 지원한다. 일본에서는 정부지원이 '70~'88년 기간중 14~30%, 대안에서는 약 1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국·공립의 국고지원이 52.8%인 반면('88년 기준) 사립대의 경우는 1%인 160억에 불과해 ‘언 밤에 오줌누기’식이다. 게다가 GNP의 3%가 우리나라 교육예산인 테 반해 다른 선진국은 4.5~6.7%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절대 규모가 빈약한 실정이다. 또 일본과 대만에서는 사립대학의 시설, 실험기자재 구입비용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며, 일본에서는 사립대 교수봉급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매년 약 150명의 교수를 정부가 채용하여 사립대에 배치하고 이들의 봉급을 대신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립대학 교육비 수입내용을 주요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의 지나친 교육열에 비해 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 전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의사 직전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국가별 사립대학 교육비 수입내역(%)

구분	정부지원	학 등록금	학 교 법인	기부금	용역	기타
세 독	100					
프랑스	90.2	3.6		5.1		1.1
영 국	60.1	13.0	16.9	1.0		9.0
미 국	18.4	38.7	14.7	14.7	23.7	4.5
일 본	22.5	60.3	8.6	8.6		
한 국	1.1	79.1	15.5	1.1		3.2

*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개정의 국제 비교 연구」 1988.

엄청나게 확대된 교육수요와 팽창(해방 당시 7,819명이었던 고등교육 인구가 현재 160만 명에 달해 200배 이상의 양적 폭발을 가져왔다. 한국 대학은 인구 면에서 세계 2위의 수준에도 달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을 따라잡지 못한 교육재정의 문제, 그 중에서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학을 동원함으로써 구조적 모순이 첨첩이 쌓인 사학을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교

육부의 '기품교육정책'이 남긴 결과이다.

개다가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 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법인은 수익금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과연 사립대학 중에서 몇 개 대학이 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지키고 있는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90년도 전국 사립대학교 재단전입금 현황과 각 대학교 예산 중의 비율」이란 자료에 따르면, 사립 51개 종합대학의 총 운영비 수입 중 재단전입금은 14.5%를 차지하였다. 한편, 사립 32개 단과대학의 총 운영 수입 중 재단전입금은 26.8%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의 재정지원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88년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80개 사립대 가운데 27개 대학의 재단전입금이

학교계정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속명여대, 경성대, 홍익대 등 3개교는 학교운영에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왜 교육부는 학교의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던 국제대와 울산대('89년) 그리고 전주대와 상지대('90년)에 대한 법적 조치를 내리지 않는가?

지난 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세계 27개국 60개 대학의 교육여건을 국민소득, 학생 수, 국·사립 유형 등의 요인으로 분석하여 국제비교한 결과를 보면, 재단전입금과 국고지원이 부실함으로 인한 교육여전의 열악함을 〈표 3〉, 〈그림 1〉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역대 정권은 지배계급의 계급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하는 기제로서 교육을 지배계급의 지배를 보장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왔다. 한수 더 떠서 교육부는 그것에 발맞춘

〈표 2〉 전국 사립대학 재단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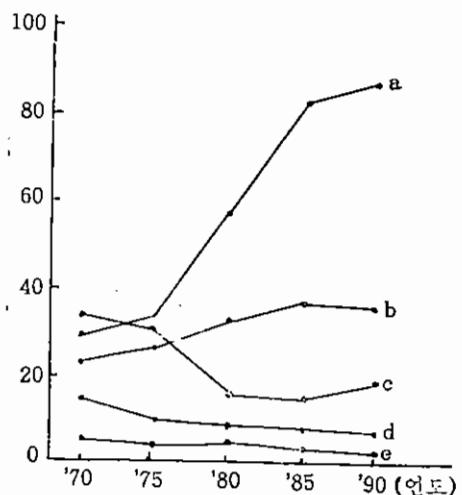
구 분	전 입 금 (a)	운영수입 (b)	전 입 비율 (%) (a/b)	구 분	전 입 금 (a)	운영수입 (b)	전 입 비율 (%) (a/b)
한 립 대	9,623,500	14,914,814	64.5	동 국 대	1,886,000	30,678,588	6.1
인 제 대	10,824,747	16,937,831	63.9	대 전 대	420,000	7,025,968	6.0
아 주 대	11,739,699	26,602,981	44.1	국 민 대	800,000	14,591,946	5.5
고 려 대	30,263,512	75,147,158	40.3	승 설 대	776,796	14,808,729	5.2
계 명 대	19,201,870	47,673,132	40.3	동 덕 여 대	319,732	6,790,482	4.7
순 천 향 대	3,040,704	12,242,413	24.3	조 선 대	1,787,235	38,360,775	4.7
연 세 대	16,234,762	72,987,219	22.3	한 국 외 대	1,200,000	25,902,444	4.6
홍 익 대	4,590,000	24,808,739	18.5	관 동 대	450,000	10,274,845	4.4
영 남 대	8,271,036	46,398,965	17.8	성 신 여 대	370,100	12,136,573	3.0
중 앙 대	7,365,041	43,536,675	16.9	인 하 대	915,297	30,679,109	3.0
한 양 대	8,370,073	57,502,590	14.6	세 종 대	200,002	8,232,970	2.4
단 국 대	5,128,424	35,560,260	14.4	한 남 대	300,000	15,032,803	2.0
전 국 대	5,000,000	39,166,800	12.8	성 균 관 대	571,500	29,614,965	1.9
경 성 대	2,091,584	16,674,743	12.5	서 장 대	250,602	15,769,664	1.6
경 원 대	1,454,154	12,147,406	12.0	상 명 여 대	152,255	10,214,912	1.5
명 지 대	2,100,000	18,401,145	11.4	동 의 대	198,000	14,005,236	1.4
광 운 대	1,000,000	9,232,504	10.8	덕 성 여 대	100,000	8,325,347	1.2
원 광 대	3,692,201	34,600,982	10.7	이 화 여 대	465,(10)	38,975,751	1.2
인 천 대	1,000,000	11,480,000	9.6	대 구 대	151,020	23,386,220	0.6
경 기 대	1,500,000	17,210,640	8.7	호 서 대	30,300	6,759,224	0.4
경 회 대	3,437,176	40,208,013	8.5	청 주 대	21,000	17,085,360	0.1
서 울 여 대	527,553	6,795,423	7.8	효 성 여 대	10,040	10,138,408	0.1
수 원 대	800,000	11,087,358	7.2	숙 명 여 대	13,000	13,950,429	0.1
경 남 대	1,700,000	24,405,748	7.0	상 저 대	3	7,570,208	0.0
동 아 대	2,210,000	34,972,121	6.3	전 주 대	0	11,621,897	0.0

〈표 3〉 세계 대학별 교육여건 비교

구 분	대 학 명	교 수 1인당 학생수	학 생 1인당 장서수	교육비 학 생 부담비 (%)
미 국	미 네 소 타 일 리 노 이 미 시 간	16 12 14	199 207 181	10 8.7 14.8
스 위 스	포 리 보 그	13	274	16
노르웨이	베 르 겐	7	1062	0
캐 나 다	엘 베 타 브 리 티 시 콜 럼 비 아 토 룬	14 13 13	95 109 190	12.1 15.1 12
스 웨 덴	고 텐 부 르 크 풀 트 우 메 아	12 9 4	— 11944 68	0 0 0
일 본	히 로 시 마 교 토 메 이 지 와 세 다	8 6 37 28	155 281 36 67	12.7 69.3 — 63
네 마크	알 보 르 크 아 루 스 오 맨 세	8 — 16	87 152 113	0 — 0
호 주	라 트로 베 뉴 사 우 드 웨 일 즈 시 드 니	15 15 13	91 72 217	— 0 0
오 스 트 리 아	요 하 네 스 케 플 러	—	—	—
네 델란드	암 스테 르 담 테 라 이 렌 터 부 르 크	7 11 14	74 137 111	15.5 7.1 14
영 국	옥 스 퍼 드 맨 채 스 테 버 밍 엠	10 10 10	368 184 —	12.3 22 13
싱 가 포 르	리 낭	—	25	15.4
중 콩	차 이 니 즈 홍 콩	10 10	135 118	6.5 5.6
스페 인	아 우 토 노 마 바 르 셀 로 나	16	12	19.1
대 만	젱 청 크 리 스 철 퍼 앵 치 아	7 19 11	129 19 25	— 76 90
말 헤 이 아	페 르 타 니 안 밀 레 이 시 아 말 라 야 케 방 산 밀 레 이 시 아 테 크 놀 리 지 밀 레 이 시 아	11 — — 7	28 117 53 29	5.3 5.6 8.9 4.8
남 공 화 아 국	반 프 레 토 리 아 위 트 워 터 스 란 드	— —	— 20	5.1 —
브 라질	카 시 아 스 도 술 브 라 질 리 아	27 9	118 50	56 0
태 국	치 앙 까 이 킹 몽 쿠 트 스 리 나 카 린 위 로 트	7 10 9	17 42 76	9.1 6.7 7
이 접 트	알 렉 산 드 리 아	30	1	50.3

필리핀	비 필리 핀	25 52	2 1	6.5 35.5
인 도 네 시 아	제 베 르 이 인 도네 시아	19 33	9 4	28 96
수 단	카 르 툴	12	55	9.4
칠 래	꼰 셉 시 농	12	29	30.2
	부 산 한 연 부 산 전 중	26 26 23 26 38 31	22 24 30 32 24 18	48.3 80 53.6 66.9 76.9 85.5
포르투갈	우 스 보 야	—	28	80

〈그림 1〉 한국 대학교육 여건의 변화



a : 강의실당 학생 수

b : 교수 1인당 학생 수

c : 학생 1인당 장서 수

d : 학생 1인당 전문면적 (m²)

e : 도서관 좌석당 학생 수

*이 자료는 교육부의 「문교통계연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우리나라 130만 원, 미국 835만 원, 일본 629만 원, 서독 502만 원이다.

을 함으로써 사학의 교육여건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교육부는 '81년 졸업정원제라는 한치 앞을 못보는 정책으로 사학재정난을 가중시켰다.

학생 수가 무려 30%씩이나 증가함에 따른 교육시설 투자에 사학은 정부의 지원없이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부채를 지니게 되었고, 교수 확보의 절대부족과 교육시설의 미비는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

며, 학생은 바로 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당사자다. 엊친 데 덮친 격으로 각 대학의 분교 설립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학의 재정을 뿐만 아니라 혼들어 놓았다. “講義는 있으나 教育이 없다”는 지적은 분교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을 펴고 교육세를 전용한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소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학재정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목적세로 거두고 있는 교육세 가운데 '88년 42%, '89년 52%, '90년 64% 가 교육 이외의 부문으로 전용되었다. 특히 '90년 64%의 금액은 1,700 억에 이르고 교육세 대비 사립대학 지원비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바로 이런 사실에서 현 정권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80년~'88년까지 16개 사립대학을 설립 인가해 주었는데, 법적 기준을 갖춘 대학은 겨우 5개 대학에 불과하였다.

7. '냄비교육' 정책——

學校債 · 編入學制 · 寄附金入學制

이처럼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과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도 정부는 이런 열악한 현실을 과감히 고쳐 나가기는 커녕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미봉책으로 학교채 발행과 '89년에 부활한 편입학제도를 사립대학에 허가해 주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입안한 학교채의 발행은 모집대상을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부모와 동문으로 제한하고 무이자를 원칙으로 액면 가격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등으로 정한 바 있다. 또 채권의 상환기간을 학생의 졸업 또는 제적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상환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자동소멸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채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인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휴학·자퇴 및 군입대로 생기는 결손인원에서 비롯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완화시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 전문대 졸업생에게 4년제 대학의 배움의 길을 터준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편입학제도는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학생의 양적 팽창과 절 낮은 대학 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 현상을 아울러 야기시켰다. 또한 편입학제도는 전문대학들이 일반 대학에 몰리는 현상을 일으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 고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4년제 대학으로 가는 중간 기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교육부는 대학법인과 한통속으로 “을고싶자 떠린다”는 식으로 전국대 부정 입시를 내세워 '85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한 ‘기부금입학제’를 슬그머니 다시 내놓고 있어 부정입학과 사학 재정난이 별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정난을 내세워 사학이 저지른 부정입시의 불가피성을 오히려 두둔하려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최작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92년부터 정원의 3% 내에서 기부금입학제 시행을 윤형섭 교육부장관과 논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정해진 순서를 밟아가고 있다. 이 제도를 주장하는 측은 기부금입학제가 아니라 기여금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돈을 받고 교원을 채용하더니 이제 돈 받고 학생을 입학시키려는가? 이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는 기여금제도의 실시를 다시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여입학에서의 ‘기여’의 개념에는 물질적·재정적 기여 이외에 비물질적·정신적 기여도 포함시킨다.

둘째, 이 제도로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정원의 2%로 한다.

셋째,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은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엄정히 평가받아야 한다.

넷째, 이 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학생선발의 과정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마련되는 재원은 장학금, 대학의 연구 및 교육기능의 강화 등에 쓰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어느 대학 교무처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 제도의 양투구육적·경강부회적인 어거지와 속내를 엿

바람에 읽을 수 있다. “기여 입학생이 내는 재원으로 수 만 명의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는다면, 이것은 이러한 학생들 개인의 희망이며, 민주국가의 희망이며, 거시적 의미의 社會正義라고까지 말한다면 그릇된 생각일까?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富의 공평분배,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이 너스레가 지닌 자유주의와 보편주의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교육을 무시한 허구와 위선에 가득차고 ‘제논 물대기’식의 어휘 구사로 사회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는가를 간파할 수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기부금 입학제 허용을 반대함에도 사학 재정난의 장본인인 정부와 재단은 교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외면·방기하면서도 배짱이들의 일하지 않고 앓아서 거두어들인 ‘냄새나는 돈’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를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입시를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이름아래 돈 있는 자들을 위해 아파트의 경우처럼 ‘채권입찰제’로 하겠다는 것인가? 금권정치에서 경제적 우위를 내세워 교육기회의 우선권을 선점하려는 ‘금권교육’으로 넘어가자는 말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시를 담보로 한 거래는 결코 없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8조 6천억 원의 공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9조 4천억 원의 私教育費(‘90년도 기준)의 흐름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있다. 이것을 소홀히하여 읊성적 입시를 양성화하고 입학을 돈으로 맞바꾸려는 교육부와 대학법인의 짚은 의도는 국민의 정서에 와 닿지 않는다. 가령 우리 교육의 ‘매도 모르고 침통을 혼드는’식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서울에 있는 세종 일류대학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또한 인기있는 단과대학과 학과에 몰릴 것은 뻔한 이치이다. ‘몇 점짜리’ 대학에서 앞으로는 ‘얼마짜리’ 대학으로 대학의 등급화가 돈의 액수로 매겨진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 제도에 의해 ‘뒷문’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학능력이 문제될 것이고, ‘앞문’으로 입학한 다른 학생들과의 위화감은 반드시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또한 기부금입학으로 들어온 학생의 사후 관리과정에서 재단과 학교당국은 교수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체육특기자의 학점 처리에서 보듯이 교수들의 심리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혼 실정에서 기부입학은 기부 학점과 기부졸업이라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으로 입시를 낚아올린 학부모들의 염치없는 국성과 거기에 빌붙은 재단은 학점과 졸업마저도 商品化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고, 따라서 학원은 황금만능주의라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주장하는 전국교무처장협의회와 총·학장들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의 원격조종을 받아 수학능력이 있고 학교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정원외의 1~2% 내에서 학생을 뽑으면 될 것이고, 더구나 외국에서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청을 불임으로써 국민을 혐혹하고 있다. 당해 대학에 시험을 보고 불합격된 학생 가운데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지만, 수학능력이 있으면 굳이 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입학하려 하는가? 수도권 인구 억제책으로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철저히 눌러왔던 교육부가 기부금입학제를 명분으로 내세워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는 조치이다. 우리의 주장은 2%에 해당되는 4천 명의 학생들에게 기부입학이 아닌 공정한 입시경쟁에 의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교육의 기회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외 학생들이 지불할 금액을 계산해 보자. 사립대는 전국에 91개이고 59만 명의 학생들이 있다. 넉넉히 계산을 하더라도 한 학교당 정원외 학생 수는 20~40명이고 이들로부터 1억씩을 받으면 1,800~3,600억 원이 된다. 이 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큰 돈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국민의 열렬한 교육열에 비해 교육 여건이 최고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지난 해 세수초과금이 무려 3조 5천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바로 이 열악한 조건 때문에 사학재정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재단의 전입금 확충과 교육재정의 확보를 요구하며 지난 수년 동안 등록금 인상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이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機能主義的 사고방식을 외국의 경우를 제시하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제도이든지 그것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관행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의 행태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문제는 우리의 고유한 조건과 풍토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에서 그것도 선진국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좋다는 수직적이고 외국 것을 좋아하는 사고방식에 있으며, 제도의 형식만을 차용 내지 수용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전통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더더욱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이 제도의 파급효과에 있다. 교육을 철저히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상품은 필경 高價品이 될 것이다. 대중화가 된, 즉 중저가 품목이 된 기존의 학교교육 내용과 시설에 불만과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일부 부유층과 소일거리 찾는 이른바 일부 명망있는 사회원로들 그리고 부의 사회적 환원 압력을 받고 있는 재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만의 특수학교를 생각할 것이다. 또한 우루파이라운드의 타결을 통해 교육부문이 개방되어 외국학교와 학원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 우리 교육계는 이와 같은 현상에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고급 중산층에서 볼 수 있는 외국 문물을 좋아하는 경향은 교육의 귀족화·고급화를 불러 일으켜서 국민 사이에 이질감의 골을 깊게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94년 각 대학마다 본고사가 다시 실시될 경우 우리의 걱정은 더욱 깊어진다. 현 시점에서 대학의 여전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시를 공정히 관리할 장치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입시의 원천적 부정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방임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른 재단권한의 강화로 입시부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더욱 약해짐에 따라 기부금입학제도는 많은 대학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아 학원 분규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미 학력고사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교수와 직원에게 한 건당 일정한 연구비와 포상을 주듯이 재단은 '학교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수와 직원을 기부금 입학생을 끌어 모으는 데 동원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지구상 어느 구석에도 돈으로 입학을 사고 파는 反교육적 '검은 거래'를 하는 곳은 없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은 社會的 還元性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처럼 교육에 대한 공개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와 재단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매몰되어 등록금 인상이나 기부금입학제를 통해 사학 재정난의 해결을 시도하려는 태도는 철저히 불식되어야 한다. 제발 학원을 '포커판'으로 만들지 말라! 총체적 부폐 구조 아래에서 아직은 덜 오염된 학원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양극화된 빈부격차를 과감히 줄이고 대학이 신뢰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의 사회화'와 '사회의 학교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름'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사학재단은 기업과 사회가 기부금을 선뜻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학교법인의 폐쇄성, 즉 비공개성과 '60~'70년대에 사립대학이 학교시설에 비해 학생들을 엄청나게 뽑아서 그 등록금을 다른 목적에 전용했고 이른바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서 자주 부정입시를 해왔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사립대학은 경쟁적으로 그들의 교세를 뽑내기 위해 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체육특기자의 선발과 30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뿐리고 있다. 체육특기자들에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에 이르는 스카우트 금액과 300점 이상 고득점자에게 4년간 등록금 면제 및 메달 용돈의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주고 있는 반교육적 행태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 대부분의 경비는 보통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지불된다. 이러한 사실

이 사학의 불신풍조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어느 교수의 지적처럼 “사학재단의 95% 이상이 8·15 이후, ’63년 전후, ’7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배경에는 토지개혁에서 면제된 토지의 학교재단화를 유도한 이래 갖가지 정부의 특혜조치가 있었다.” 따라서 사학재단 가운데 땅 재벌이 의외로 많으며 어느 대학의 이사장 부인은 제주도에 빼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재단은 대학의 외형적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물밀 거래로 해결을 해왔다. 또한 등록금 인상에만 혈안이 되었지 교육재정을 위해서 다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찾는 데 소홀히하는 등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젓밥에만 마음이 있었다.

8. 問題點에 대한 代案

이제 재단은 교육부와의共生關係를 철저히 차단하고 교육관료의 경직성과 오만함 그리고 교육부의 시혜적이고 면질식인 ‘냄비교육’ 정책은 앞으로 떨쳐 버려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냉전 종식의 흐름에 따라 군사비를 줄여 열악한 사학재정에 국고를 지원해서, 그것도 최대한의 지원과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통해 사학재정과 대학 자율화의 협로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와 대학법인은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즉각 개정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법인은 입사부정을 빌미로 대학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구실로 기부금입학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헌법에 보장되

어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교육주체로서, 법인은 교육관계법에서 규정된 경영주체로서 결합되어야 한다. 법인은 사학의 공공성·자주성·특수성을 존중하고 教育의 公概念이라는 교육철학을 견지해서 대학을 뒷받침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젠 더이상 교육을 내세워 富를 축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축근 인사의 폐쇄성과 비전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범적으로 7~1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양식있는 교육인사를 중심으로 이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하며 재정확보와 경영의 전문성·효율성·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교직원 인사의 공채와 더불어 대학재정에 대한 공식기관의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에게 인사권·재정권·학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적 전환, 즉 構造的 조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국·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백화점식’으로서 특성없이 운영되고, 교육시설의 영세합과 교육내용의 부실이 극심하다. 따라서 대학의 특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첨단 과학교육이나 공과대학 육성은 국립이 담당하고,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예·체능 계통은 사학 내지는 유럽의 경우처럼 전문학교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실태학을 과감히 정리해서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의 교육이 ‘냄비’ 교육이 아니라 ‘가마솥’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